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6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 민홍철 · 문대림 · 이기헌

김문수・황 희・한정애

윤종군 • 복기왕 • 정준호

손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, 가족돌봄휴직·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·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, 그 실효성 차원에서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먼저,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휴가·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·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.

한편,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위하여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데

반해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.

또한,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'불리한 처우'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 에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·책임·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 도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, 배우자 출산휴가를 '근로자가 원하는 때에' 주도록 명시하고,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며, 배우자 출산휴가 ·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호·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1 8조의2제1항 전단 등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불리한 처우"란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 - 나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·승급(昇級) 제한 등 부당한 인 사조치
 - 다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 사조치
 - 라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·수 당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- 마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 - 바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 - 사.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

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"를 "불리한 처우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 제14조의2제2항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"배우자"를 "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, "경우에"를 "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한다"를 "하며, 근속기간에 포함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"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18조의3제2항 중 "해고, 징계 등 불리한 처우"를 "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"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.

제19조의2제5항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22조의2제6항 중 "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"를 "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22조의3제5항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"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3호 중 "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"를 "제14조제6항"으로, "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 제2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2호의2·제3호 및 제4호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각각 "불리한 처우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"를 "근로자에 대하여불리한 처우"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"를 각각 "불리한 처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"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제39조제3항제2호 중 "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"를 "불리한 처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"불리한 처우"란 사업주가
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조치로 근로자를 합리
	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
	<u>처우하는 것을 말한다.</u>
	<u>가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</u>
	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
	불이익 조치
	나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
	승진・승급(昇級) 제한 등
	<u>부당한 인사조치</u>
	다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
	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
	에 반하는 인사조치
	라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
	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
	른 임금·수당 또는 상여
	금 등의 차별 지급
	<u>마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</u>
	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

제14조(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제14조(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) ① ~ ⑤ (생 략)

-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 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 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
- 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- 3.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 는 인사조치
-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 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

한

바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・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<u>방치하는</u> 행위

사. 그 밖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

조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-----불리한 처우-----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급

- 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
- 6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 언 등 정신적 ·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.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 하는 불리한 처우
- ⑦ (생략)
- 롱 방지) ① (생 략)
 -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 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 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(7)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고객 등에 의한 성희 제14조의2(고객 등에 의한 성희 롱 방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<u>불리한 처우</u>
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------배우자(사실 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

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 -----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때

- ② ~ ④ (생 략)
-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<u>근로자를 해고하거</u>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(생략)
 -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<u>해고, 징계 등 불리한</u> <u>처우</u>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(생략)
- 제19조(육아휴직) ①·② (생략)
 -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 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 - 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<u>에</u>	
하며, 근속기간에	포함
<u>한다</u> .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⑤	
<u></u> 근로자에게 불	블리한
처우	·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) (현
행과 같음)	
2	
근로자에게 불리한	처우
③ (현행과 같음)	
제19조(육아휴직) ①・② (현	변행과
같음)	
3	
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	<u>-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	
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	른 육

⑥ (생략)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- ① ~ ④ (생 략)
-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·⑦ (생략)

- 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제22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⑤ (생 략)
 -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 l ⑥ ------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 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~ ⑩ (생 략)

근로시간 단축) ① ~ ④ (생 략)

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 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 경과한 날에 육아휴직이 개 시된 것으로 본다.

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-불리한 처우-----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등을 위한 지원) ① ~ ⑤ (현 행과 같음)

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-

⑦ ∼ ⑩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3(가족돌봄 등을 위한 제22조의3(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) ① ~ ④ (현행 과 같음)

-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<u>해고</u>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·⑦ (생 략)

제24조(명예고용평등감독관) ① •

- ② (생 략)
-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<u>인사</u> <u>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</u>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(생 략)

제26조(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 청)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(이하 "차별적 처우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 「노동위원회법」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(이하 "노동위원회"라 한다)에 그 시 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차 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(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 료일)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

⑤
불리
<u>한 처우</u>
⑥・⑦ (현행과 같음) 제24조(명예고용평등감독관) ①・ ② (현행과 같음) ③
불리
<u>린</u> 한 처우
④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
청) ①
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 또는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
- ②・③ (생략)

제29조의7(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의 금지)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2. (생략)
- 2의2.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<u>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</u> 를 한 경우
- 3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
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14조제6항
불리한 처우
① ② (청체코 가 O \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의7(차별적 처우등의 시정
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
의 금지)
<u>불리한 처우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
- <u>불리한 처우</u>
3
0.

아휴	직을	이유	구로	<u>해</u> .	고니	- ,	コ
밖의							
같은	항	단서.	의	사유	가	없	는
데도	육아	휴직	기	간동	안	해	당
근로	자를	해고	한	경우			

- 4.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<u>해</u>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5. (생략)
- 6.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지 또는 가족돌봄휴가(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7.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<u>해고나 그 밖의</u> <u>불리한 처우</u>를 한 경우
- 8. (생략)
- 9.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근로 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

<u>불리한 처우</u> -
4
<u>불</u>
<u>리한 처우</u>
5. (현행과 같음)
6
<u>근로자</u>
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
7
H -1 -1 0
<u>불리한 처우</u>
O /처체되 가 O \
8. (현행과 같음) 9
<u>불리한 처우</u>

한 처우를 한 경우

- ③ (생략)
-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 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제39조(과태료) ①・②(생략)
 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1의7. (생략)
 - 2.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 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 <u>치</u>를 한 경우

③ (현행과 같음)
4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불리한 처우</u>
제3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1. ~ 1의7. (현행과 같음)
2
-불리한 처우

3. ~ 9. (생 략)

④・⑤ (생략)

3. ~ 9. (현행과 같음)

④・⑤ (현행과 같음)